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 (찬성자 42명)

나. 의안번호 : 제 641 호

다. 발의일자 : 2023. 3. 29.

라. 회부일자 : 2023. 4. 3.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쾌적하고 깨끗한 상품의 상행위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골자

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교통전문가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위치부적정 시설물 중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 위치하거나 횡단보도 근접해 보행자 통행 불편 초래하는 등의 시설을 이전하는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같은 호 마목 등)

다. 가로판매대에서 취급 가능한 물품 외 판매금지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제5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식품위생법」 등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에 교통전문가를 추가하는 한편, 위치부적정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추가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p> <p>1. 위원 중 5명은 <u>법조인·사회복지전문가·시민단체대표</u>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2.·3. (생 략)</p>	<p>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u>법조인·사회복지전문가·교통전문가·시민단체대표</u> -----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설물 이전)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위치부적정 시설물</p>	<p>제8조(시설물 이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u> 위치하여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다. <u>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u>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마. <u>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u>
만. (생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신문, 잡지,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구두수선대’로 구분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총 1,443개(가로판매대 613개, 구두수선대 830개)가 운영중에 있고 판매부진 및 운영자 고령화 등에 따른 영업 포기로 매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연도별 증감 현황 ('23.1.1.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852	1,764	1,671	1,552	1,443
가로판매대	842	785	728	670	613
구두수선대	1,010	979	943	882	830
증감(전년대비)		△88	△93	△119	△109

-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우선 원칙에 따라 동 조례 제12조1)에

- 1) 제12조(시설물 철거) ①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 한편, 전매, 전대 등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표] 보도상 영업시설물 단속 건수 ('23.1.1.기준)

연도	점검대상	적발건수	적 발 내 용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 미게시	타인 운영	전매·전대	기타
2018	1,852	436	30	35	1	370
2019	1,764	369	14	17	-	338
2020	1,671	277	10	47	-	220
2021	1,552	352	141	72	-	139
2022	1,443	107	32	20	1	54

■ 주요 골자별 의견

- 먼저, 안 제4조제2항제1호는 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촉 위원에 교통전문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 현행 제8조제2항제2호2)에서 규정하는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2.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③ 누구든지 2001년 8월 1일(조례 제3889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2.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나.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다.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라.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마.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파악을 방해하거나 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위치부적정 시설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통전문가의 교통흐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교통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촉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여겨짐.

- 참고로, 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전문가 5명,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2명, 관련 공무원 3명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해임하는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연 1회 이상 구성하여 안건을 처리하고 있음.
- 2022년 4월에 개최된 위원회는 동 조례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³⁾에 따른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선정, 특례지원 대상자⁴⁾별 선정 심사기준,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연장승인 등을 심의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특례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5월 중 위원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제2호다목은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3) 제12조의2(시설물 철거의 특례) ①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례지원자에게 3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회 또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례지원자를 선정하거나 운영지도 등 일부 관리를 관련부서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특례지원자 중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특례지원자 순서(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의 의사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순으로 정함.

시민들의 시야를 가로막는 위치부적정 시설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현행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의 주변”을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한 위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승하차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은 시장이 지정하는 위치 부적정 시설물에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근접한 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난 1월 관악구 시흥대로에 위치한 보도상영업시설물(시흥대로 576)과 거리가게(시흥대로 570)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시야확보 방해가 발생하여 접근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 소관부서에서 처리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점 등에서 살펴볼 때,
- 시장으로 하여금 횡단보도에 근접하게 위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는 시설물의 이전조치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하겠음.